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이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 시·도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¹⁾,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²⁾,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³⁾, ④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⁴⁾ 중 조례로 정

1)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 12. 31. 기준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는 총 1,026개임.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청문 대상 직위 현황>

구 분		대상 직위 수(「지방자치법」 §47의2) : 총 1,026개			
		부시장·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합 계		2	2	165	857
서울	광역	2	0	6	16
	기초	0	0	24	49
부산	광역	0	0	5	16
	기초	0	0	2	13
대구	광역	0	0	4	8
	기초	0	0	1	14
인천	광역	0	0	5	12
	기초	0	0	8	15
광주	광역	0	0	4	14
	기초	0	0	3	4
대전	광역	0	0	4	14
	기초	0	0	0	5
울산	광역	0	0	2	7
	기초	0	0	4	4
세종		0	0	2	9
경기	광역	0	0	4	24
	기초	0	0	32	132
강원	광역	0	0	1	24
	기초	0	0	9	63
충북	광역	0	0	1	13
	기초	0	0	3	31
충남	광역	0	0	1	14
	기초	0	0	5	51

구 분		대상 직위 수(「지방자치법」 §47의2) : 총 1,026개			
		부시장·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전북	광역	0	0	1	15
	기초	0	0	4	46
전남	광역	0	0	1	24
	기초	0	0	2	60
경북	광역	0	0	2	19
	기초	0	0	9	53
경남	광역	0	0	1	16
	기초	0	0	12	58
제주		0	2	3	14

※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 사항, ② 병역신고사항,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④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하여야 하고⁵⁾,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거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⁶⁾,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출하여야 함⁷⁾.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의 전 과정을 혼자 준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인사청문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고⁸⁾, 후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인사청문에

6)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8) 참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있음.

“아직 임명 전인데...”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 직원 동원 ‘시끌’, 경기일보, 2025.2.23.

[사설] 경기도기관장 청문회에 기관 동원, 근거 조례 없다, 경기일보, 2025.2.25.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⁹⁾, 일부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부천시·예산군·사천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¹⁰⁾.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비교>

	국 회	지방의회
법적 근거	• 국회법(§46-3, §65-2) • 인사청문회법 : 운영 및 절차	• 지방자치법(§47-2) • 조례 : 운영 및 절차
대상	총 60여 개 직위	총 1,000여 개 직위
	• 국무위원 • 방통위원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 공수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 서울특별시 행정 1·2부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의무	의무적으로 실시	지자체장 요청에 따름(재량)
주체	인사청문특위, 상임위	인사청문특위, 상임위 등 (조례로 정함)
제출 서류	• 직업·학업·경력 사항 •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일반적으로 국회와 동일)

※자료: 행정안전부

9)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은 2010. 5. 28.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제·개정이유에는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10)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② 시장과 공공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점과 지원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인 경우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지원 주체가 되므로, 이들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사청문 후보자가 각종 서류 및 답변서 제출 등 수많은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정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의 대다수가 지방공사 사장, 공단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의 주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11) 참고로, 부산광역시에는 시장, 공공기관을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에는 시장을, 사천시는 집행기관을, 예산군은 군수를 규정하고 있음.